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2. 3. 14.(월) / 총 6매(본문5. 참고1)	
담당부서	국토정보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윤종수, 사무관 권순길, 주무관 박일웅 ☎ (044) 201-3460, 3462
	건축정책과		• 과장 이진철, 사무관 이남일, 주무관 전광웅 • ☎ (044) 201-4082, 4754, 4752
보도일시		2022년 3월 1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15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·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

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

-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시행령 개정 및 「보안심사규정」 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,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1.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시행령 개정 · 「보안심사규정」 제정

- 지금까지 관리기관(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)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 · 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*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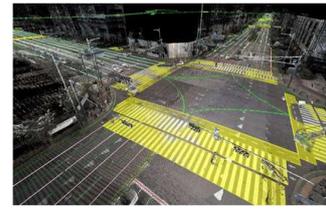
* 3차원 공간정보,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,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



<항공사진>



<3차원 공간정보>



<정밀도로지도>

-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 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*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.

* 「공간정보산업법」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, 「위치정보법」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

- 앞으로는 자율주행,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(AR·VR)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·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시행령 개정 및 「보안심사규정」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

-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,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하였다.
- 다만,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·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

-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*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*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, 「공간정보산업법」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, 「해양조사정보법」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등

- 이 경우,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*, 비밀취급인가,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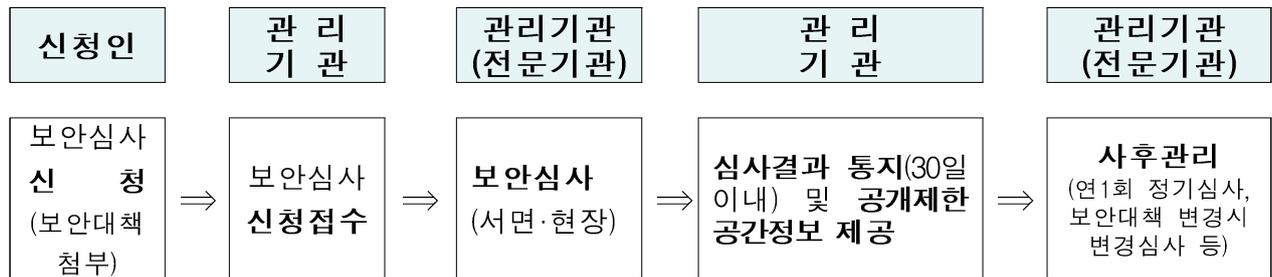
*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

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

○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*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,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하였다.

*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(관리책임자 지정,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)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

[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]



□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·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”면서,

○ 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2.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 시행령 개정

□ 이번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,

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(공포 '21.3.16. 시행 '22.3.17.)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

-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,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,
 -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,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,
 - * 철거 예정일 결정 시,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
 -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(건축주 1인 추천 포함)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.
 - * 착공 당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투입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물리적 감가 등 반영
-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·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,
 -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*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 - * 시·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,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

②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

-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, 정비 기본계획수립,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, 시장 등과 협의하고(현행, 시·도지사), 경미한 계획변경*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였다.

*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, 총사업비의 10% 범위 내 변경 등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,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”된다고 밝혔다.

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시행령 개정 및 「보안심사규정」 제정, 「방치건축물정비법」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3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정보정책과 권순길 사무관(☎ 044-201-3460), 박일웅 주무관(☎ 044-201-3462), 건축정책과 이남일 사무관, 전광웅 주무관 ☎ (044) 201-4082, 4754, 475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참 고

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 기준

공 정 간 보	등 급	분 류 기 준
항 공 사 진	공 개 제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 ○ 2차원좌표(緯·經度)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좌표(緯·經·高度)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
위 성 영 상	공 개 제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○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○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
전 자 지 도	공 개 제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군사지도 ○ 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○ 단, 항공기·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·통신·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○ 1:1,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
해 양 공 간 정 보	공 개 제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○ 단,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, 해양레저, 해양공간 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○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
기 타 공 간 정 보	공 개 제 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○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○ 단,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 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